

[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1. 11. 6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11. 7

다. 의안번호 : 제 39 호

라. 상정일자 : 2001. 11. 8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 전자공인의 비치 및 사용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사용 및 관리규정 신설 (안제6조3항)

## 3.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비치·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 사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비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 신청과 폐기신고 및 등록대장 기재요령을 규정함으로써,
- 이후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무인 민원 증명 발급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공인 사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1. 11. 6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11. 7

다. 의안번호 : 제40호

라. 상정일자 : 2001. 11. 8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연장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에서 “90”일로 개선(안제2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 휴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여자공무원의 출산 휴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1. 11. 6
-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1. 11. 7

### 다. 의안번호 : 제41호

### 라. 상정일자 : 2001. 11. 8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용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
  - 무인발급기 설치사항(장소, 발급개시일 등)을 고시하여야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근거와 전자 수입 증지 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근거와 전자 수입 증지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 설치장소 및 발급 개시일 등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1. 11. 6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11. 7

다. 의안번호 : 제42호

라. 상정일자 : 2001. 11. 8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 역시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 역시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의한 제 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제증명등의 수수료 요율 중, 1필지를 기준으로 500원을 징수하던 개별 공시지가 확인 및 토지 또는 임야 대장등본 지가 병기 발급시의 수수료를,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1회 공시기준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동일 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원을 징수하도록 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1. 11. 6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11. 7

다. 의안번호 : 제38호

라. 상정일자 : 2001. 11. 8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현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 거창읍 가지리 소재 공동묘지(소유:거창군)에 거창읍 공동사용 납골묘(약500기)설치 및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 진입도로가 없어서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 사업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이용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금회에 공동묘지(납골묘)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묘지(납골묘)관리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함  
⇒ 부지매입계획 : 토지(임야) 1,516m<sup>2</sup>(459평)

나.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지 목	수 량	예정금액 (공시지가)	비 고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산168-1번지 (총 면적 18,043m <sup>2</sup> 중 1,516m <sup>2</sup> )	임야	1,516m <sup>2</sup>	854천원	공시지가 m <sup>2</sup> 당563원

※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금액이 아님으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소유인 공동묘지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묘지 및 납골묘 관리와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계획으로
-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상의 취득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소유인 공동묘지에 거창읍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기 정도의 납골묘 설치와 함께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 진입도로가 없어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 사업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묘지 및 납골묘 관리와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임야 1,516㎡(459평)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상의 취득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